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02회 임시회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2304호)

## 제안설명



2021. 9. 7.

서울특별시의원 장 상 기  
(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, 장상기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
지정·공고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 
건폐율을 50%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○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

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

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로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

현행 건폐율 40% 완화로는 법정 용적률조차 맞출 수 없어

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○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

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행위가 한정적이어서

노후·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

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

이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조건을 확대하여

노후·불량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